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

성 북 구

(행정지원과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3년 10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치구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 시설로 구내식당을 포함하라는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요청에 협조하고, 사업의 대상, 종류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속 공무원 정의 변경(안 제2조)
- 나. 적용 대상 정비(안 제3조)
- 다. 후생복지시설에 ‘구내식당’, ‘직장 어린이집’ 포함(안 제6조)
- 라. 후생복지시설 확보·운영 가능 명시(안 제6조)
- 마. 단체보험 가입, 건강검진비, 예방접종 지원 등 사업 구체적으로 명시
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
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~④(생략)

나. 합 의 : 해당없음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2023. 8. 17. ~ 2023. 9. 6. (20일간)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3) 비용추계 등 자료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대상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대상아님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구의회사무국.”을 삭제한다.

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(구의원 포함) 및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내식당, 직원 편의시설, 체력단련시설, 휴양시설, 직장 어린이집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확보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제6호 중 “건강증진·체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”을 “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, 예방접종 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7호에서 제9호까지를 제8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속 공무원의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소속공무원”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본청· <u>구의회사무국</u> ·보건소·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 2. ~ 4. (생략)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----- ----- 본청·보건소·동에 ----- -----. 2. ~ 4. (생략)
제3조(적용범위) ① (생략) ② <u>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3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<u>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은 <u>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(구의원 포함) 및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.</u>
③ <u>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.</u>	③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</u> 1. ~ 4. (현행 제3조제2항1~4.와 같음)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구청	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구청

장은 <u>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</u> <u>직원 편의시설, 체력단련시설,</u> <u>휴양시설 등 공무원의</u>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	장은 <u>예산의 범위에서</u> 구내식 <u>당, 직원 편의시설, 체력단련시</u> <u>설, 휴양시설, 직장 어린이집 등</u> <u>소속 공무원의</u>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<u>확보·</u>운영할 수 있다.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구청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 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. 1. ~ 5. (생략) 6. 소속공무원의 <u>건강증진·체</u> <u>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</u> 7.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현 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8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의 명 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9.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업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<u>체계적인 건강관리</u> <u>를 위한 건강검진비, 예방접종</u> <u>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 운영</u> 7. <u>소속 공무원의 질병 및 사고</u> <u>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</u> 8. (현행 7호와 같음) 9. (현행 8호와 같음) 10. (현행 9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직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시행시 백신 구입비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 - $1,750\text{명} \times 12,000\text{원(백신단가)} \times 0.8 = 16,800\text{천원}$

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홍 지 현